

석유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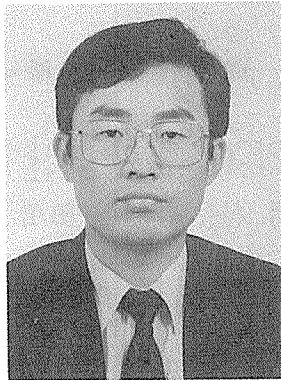
문민정부가 새로이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가운데 의욕적 청사진과 부푼 기대감속에서도 그 변화에 따르는 갈등과 불안도 적지않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창의, 고통분담을 기치로 내건 신경제 5개년계획이 발표되었는바, 문민정부의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국내 석유산업과 관련하여 규정하자면 한마디로 정부규제완화 및 자유화라 할 수 있겠다.

국제적으로 냉전종식이후의 새로운 정치·경제질서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국익우선주의, 지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화와 생산요소의 이동 및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개방화, 세계화가 심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는 그동안 규제와 보호의 틀에서 성장해 온 국내석유산업에 대하여 각별한 대응과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자유화·개방화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나 기업에는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나 기업에는 사활적 문제가 걸린 위협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제 자유화, 개방화를 목전에 둔 국내 석유산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경쟁력의 제고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도



박영덕
〈유공 업무부장〉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이익 증대라는 본질을 바탕으로 규제완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석유산업 시장환경과 구조적 현안을 먼저 살펴보고 앞으로 전개될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국내 석유산업의 시장환경

1. 세계석유시장

70년대의 국제석유시장은 산유국의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소비국과의 대결양상을 보이고 유가양등 및 석유위기를 겪은 시기라면, 80년대는 이에 반발한 소비국들의 수요감축노력으로 인한 잉여생산의 발생으로 저유가 및 안정공급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는 산유국은 원유수요증대 및 생산능력 보강·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조달을 위해 유가안정을 원하고 있으며, 소비국 역시 석유시장안정을 바라고 있어, 수급/가격측면이 모두 안정될 전망이다. 세계석유수요는 세계경제가 아직 침체의 늪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1993년 상반기에는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으나, 향후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표-1 참조)에 따라 소폭의 증가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증기적으로 이라크의 시장복귀 및 산유국의 생산능력이 잉여(표-2 참조)됨에 따

라,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격측면에서 보면 중기적으로는 선진국의 탄소세 도입 움직임에 대한 산유국의 반발가능성 등에 따른 유가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OPEC 산유국의 생산능력이 잉여인 상태이며 이라크의 수출재개 가능성 등에 따른 공급안정으로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2. 국내석유시장

세계 최고수준의 수요증가세를 지속했던 국내석유수요가 올해 들어서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1993년 상반기 내수증가율이 전년대비 5~6% 정도의 증가에 그침으로써 수요의 급증에 대한 우려는 일단 면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석유수요는 에너지절약정책강화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경제성장지속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경제성장을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

특히 자동차 보급확대로 인한 휘발유·경유 등의 수송용 유류, 수요급증, 석유 화학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나프타수요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경질유 수요는 계속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중질유수요는 LNG 및 지역난방 보급확대 등으로 매우 낮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수요구조의 경질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1993년 7월 1일부터 초저유황경유(0.2%S)와 초저유황 B-C유(1.0%S)의 사용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연료유 수급의 저유황화 추세는 가

실정이다.

일층 진전될 것이다.

Ⅲ. 국내석유산업의 구조적 현안

1. 저조한 수익성과 투자재원 조달의 문제

<표-1>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

	1991	1992	1993	1994	1995
전 세계	△1.4	0.0	2.0	3.2	3.6
미 국	△1.2	2.1	3.3	3.1	2.8
일 본	4.1	1.3	1.5	3.8	4.4
서 유 럽	0.5	1.0	0.7	2.2	2.8
개 도 국	3.5	4.1	5.0	5.1	5.3

* WEFA 세계경제전망('93. 4.)

<표-2>

OPEC의 조업도

(단위 : 백만B/D)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OPEC원유생산량 (A)	24.2	26.1	27.2	27.8	29.3	30.5
OPEC Capacity (B)	26.3	28.9	31.1	33.4	33.9	34.5
A ÷ B	92%	90%	87%	83%	86%	88%

* Stock Watch Annual ('92)

국내 정유산업은 정부의 물가관리 우선정책과 엄격한 이익규제하에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어, 향후 경쟁력 및 자생력의 강화를 위한 대응력이 원천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유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정제비 등 정상적인 원가에 대해서 비용부인 등을 통하여 원가중 일부를 유가에 반영시키지 않음으로써 정유사의 손익악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국제원유가격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가인상요인을 유가에 적기에 반영시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정유사의 누적손실에 대한 보전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정유사는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미수금부담에 따른 자금난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정유사의 세후이익을 전년말 자기자본의 10% 수준 이내로 관리해 오며 따라 국내 정유사는 자생력 기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기자본의 10% 수준의 이익이란 주주에 대한 적정배당수준 내지는 공급리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기업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이익률일 뿐이며, 성장을 위한 내부유보이익이나 투자 등 경영리스크 보상 수준에는 못미치는 선이다. 더우기 정부는 정유사에 발생한 일부비용에 대하여는 원가부인 등 과도한 이

익규제로 인하여 정유사는 그나마 허용된 이익수준은 커녕,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의 이익만을 내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정유산업의 이익률이 최근 수년간 제조업 평균이익률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 있다. (표-3 참조)

이처럼 저조한 수익률로는 재투자재원을 안정확보할 수 없으며, 외부차입금만으로는 막대한 투자재원 소요를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요구조 변화에 따른 고도화 시설 확충 및 원가절감을 위한 물류합리화 등 개방화·자유화시에 대비한 자생력 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정유산업으로서는 수익성 향상을 통한 재투자재원 조달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기자본의 10% 수준의 이익이란 주주에 대한 적정배당수준 내지는 공급리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기업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이익률일뿐이며, 성장을 위한 유보이익이나 투자 등 경영리스크 보상 수준에는 못미치는 선이다.

2. 취약한 유통부문

정부는 과거 10여년간 정유사의 대리점 및 주유소 취득금지조치(3.14조정명령)를 통해 정유사는 유통망 참여를 규제하여 왔다. 또한, 3.14 조정명령과 주유소 거리제한 존속이라는 주유소보호의 반대급부로 정부는 고시유통마진을 장기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사실상 동결시켜 왔다. 그 결과 정유사의 직영 또는 관계 소매망 비율은 극히 저조하여 정유사는 소매망에 대한

<표-3>

주요업종별 자기자본이익률 비교

(단위 : %)

	정 유	자동차	가 전	한 전	제조업평균
1986	9.4	10.6	12.5	-	10.2
1987	9.8	12.2	10.1	9.2	9.6
1988	8.5	7.3	11.8	14.3	9.0
1989	5.9	5.0	11.3	11.0	5.5
1990	0.2	6.9	6.4	8.0	5.1
1991	△ 3.1	4.1	4.6	8.6	5.2
1992	0.0	2.3	4.5	8.3	3.2

가격선도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며, 주유소도 유통마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익 추구보다는 정유사와의 거래조건교섭에 의한 이익추구를 중시하는 파행적 영업구조가 고착화되어 정유사의 주유소업체간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1991년 11월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유소에 대한 거리제한 완화로 신규 주유소의 설치가 급증하여 주유소당 휘발유 판매량이 대폭 감소추세에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소의 경영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안에 거리제한 규제가 철폐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시행령의 개정여부 및 개정시의 새로운 Ruling방안을 놓고 현재 관련업체간에 적지 않은 마찰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주유소 상표표시제와 함께 주유소 허가제도 문제는 정부, 정유업체, 유통업체간에 심각한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바, 국내석유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석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승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한편, 현재 국내 석유산업의 물류시설은 현대화는 고사하고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 손에 전달하기까지도 쉽지 않은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석유제품의 물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교통난 및 부지확보문제를 들 수 있는데 교통난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석유산업은 그 특성상 부지확보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유소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에는 들어설 수 없을 뿐 아니라 1차 수송수단과 연결가능한 부두, 철도, 송유관로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제약을 안고 있다. 더우기 기존에 설치된 저유소는 국내경제규모 및 수요규모가 영세했을 당시에 설립된 것이 많아 최근 수년간 급증추세를 보인 석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전/확장이 불가피한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바, 이를 수용해 줄 적소의 부지가 절대 부족하다.

또한 산업용 및 민생용 유류를 공급하는 공공시설인

저유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피현상이 심해, 심지어 기존 저유소의 이전요구까지 있는 실정이고 보면 저유소 신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IV. 석유산업의 정책 환경변화

새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은 석유산업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첫째는 에너지·자원부문에서의 계획으로, 정부는 석유류 가격자유화, 정유산업 신규참여허용, 수출입제한 완화 및 유통부문 규제완화 등 석유산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격이 자유화될 경우, 정부는 정유사의 가격결정을 감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유사는 그동안 정부에서 결정하던 석유류 가격에 대해 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되며 이에 따라 경영에 대한 과실은 전적으로 정유사에게 귀결되어 실질적인 책임경영이 정착될 것이다. 그리고 정유산업에 대한 신규참여가 허용되고 수출입제한이 완화될 경우, 그동안 파점체제속에서의 경쟁보다 더욱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기존 시장의 확대차원에 그치지 않는 생존차원에서의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유통부문에서의 규제완화는 주유소의 허가제 완화 또는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주유소의 급격한 증가 및 주유소간 경쟁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상적인 영업마진보다는 가격할인이나 외상기일 연장 등 정유사와의 거래조건협상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주유소의 현실로 보아 정유사의 유통비용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 또는 주유소의 경영부실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둘째로, 재정부문에서의 계획으로 석유류제품에 대한 특소세 인상과 함께, 현행 유가관리의 가장 중요하고 수단이 되고 있는 석유사업기금의 에너지·자원 특별회계로의 편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동안 공급위주로 관리해오던

석유제품의 물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교통난 및 부지확보문제를 들 수 있는데 교통난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석유산업은 그 특성상 부지확보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위주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외국에 비해 저렴했던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인상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수요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수요급증에 따라 큰 부담이 되어 온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석유산업 및 시장의 규제완화에 따른 요인에 수요둔화요인이 겹쳐 정유사간 점유율신장을 위한 시장확대경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노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유가 급등락시 적기에 유가완충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경제안정에 일익을 담당해온 석유사업기금이 에너지·자원 특별회계로 편입되면, 유가관리수단으로써의 기금의 역할이 사실상 없어지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유가자유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국제유가의 급변 등 비상시에 정부의 탄력적인 유가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로는 금융부문의 계획에서 석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자본거래 자유화 추진이다. 정부는 국내 설비투자에 대한 외자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도화 설비 확충 등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정유산업은 비교적 조달 코스트가 싼 외자도입이 용이해져 설비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석유기업의 국내석유시장에 대한 자본참여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네제로는 정부의 공정거래제도 강화를 들 수 있는데, 현재 석유산업은 유통계열화가 미정착되고 정유산업과 주유소업체간 갈등대립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자칫하면 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업계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공존발전을 도모하면서 건전한 시장경쟁질서 정착과 경쟁효과의 소비자거속을 촉진시키기 위한 석유산업고유의 공정경쟁 *Ruling*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V.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

**정유산업에 대한
신규참여가 허용되고
수출입제한이 완화될 경우
그동안 과점체제속에서의
경쟁보다 더욱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석유시장의 자유화/ 개방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또는 실천작업을 해야 할 때로 현재 석유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시기이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현재 국내석유산업이 자유화를 이행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제반 구조적 현안 즉, 무엇보다도 먼저 저조한 이익률에 빠져있는 정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취약한 유통부문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해 나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정책방향의 구체화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특히, 석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동 개정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수렴되어 석유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가 촉진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국내 석유산업 각 주체는 단계적이고 집단이익 우선적인 인식을 과감히 극복하고 더불어 발전하겠다는 중장기적이고 공동이익극대화를 우선하는 인식이 선행되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못지 않게 요구되는 것은 석유산업 내부의 기업체질 변화노력이다. 현재 각 정유사들은 향후의 자유화·개방화에 대비하여 기업의 국제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체질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유공의 경우를 예로들자면, 업무개선, 조직개편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체질강화에 이미 착수하였으며, 중국 등 해외석유산업 진출검토 등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체에너지 개발, 환경보전투자의 증대 등에도 힘쓰고 있는 등 경쟁력강화 및 내실있는 경영을 위한 대응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유산업의 체질강화노력을 정부는 정책적으로 뒷

받침하여야 할 것인 바, 이는 곧 이익규제정책의 계검토를 의미한다. 기업에 있어 이익은 가장 건실한 투자재원으로 기업발전과 경쟁력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정유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최근 들어 제조업평균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는데, 앞으로 시장경쟁의 가열시 경영부실화의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유사도 원가절감을 통한 이익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지만 이익으로 귀결되기 힘들 뿐 아니라 재투자재원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과감히 인정하여, 이제는 적정 허용이익율수준 또는 허용이익규제 자체의 존속여부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석유물류부문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역별 산발적으로 기업차원에서 이루어 지던 물류합리화를 전국적·체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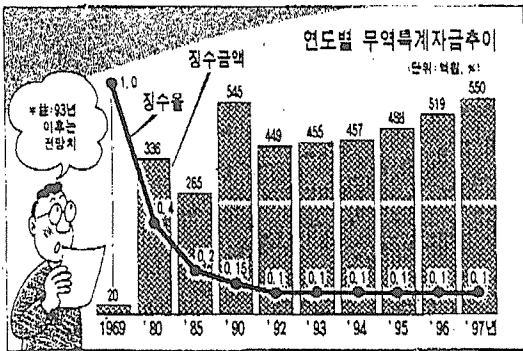
요가 있다. 일본정유사의 물류합리화노력은 이미 '8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이제는 1단계합리화가 완성단계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수급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한 실정으로, 당장 시급한 저유소 확충 등 석유물류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는 물류합리화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남북 송유관 건설을 계기로 공동수송·저장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도 신경제 5개년계획에 물류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석유물류에 대해서는 부두 증설, 주유소의 이전·확장, T/L 주차장 확보 등 관계될 소지가 많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을 때 산업체나 소비자 모두 더욱 값싸고 안정되게 석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용어풀이 ■

무역특혜란

수입액 일정비율 징수... 海外시장개척등 지원



무역특혜자금은 지난 68년 12월 무역협회가 임시총회를 개최, 「민간차원의 수출진흥활동 지원」을 위해 수입부담금을 특수회비 명목으로 징수키로 결의하면서 탄생됐다. 정부는 이제도에 대한 법적 뒷받침

을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수입승인시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토록 규정, 69년부터 징수가 시작됐다. 첫해엔 징수율이 1%로 20억원이 조성돼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지원등에 사용됐다. 이후 징수율을 계속 낮춰 92년부터 0.1%로 하향조정했으나 수입규모가 늘어나 올해의 경우 4백5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징수대상은 ▲외화획득용 원료 ▲정부기관의 官需用물자 ▲외화도입법에 의한 수입 ▲방위산업용원자재등에 해당하는것을 제외, 연간 총수입액의 50~60%에 이른다. 貿協의 올 특혜예산에 따르면 4백55억원중 ▲통상진흥사업 1백7억여원 ▲貿公지원 46억여원 ▲貿協전산용 41억여원 ▲중소기업 경쟁력향상사업 36억여원 ▲해외시장개척기금 1백억원 ▲종합무역자동화사업 1백14억원등으로 나누어 쓰는 것으로 돼있다.